

증평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2011. 4. 29
조례 제371호 〕

전부개정 2018. 5. 10 조례 제814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증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법인의 설립) 출자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제3조(정관)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주식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그 밖에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①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의 부대사업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증평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정관

증평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증평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5. 10 조례 제81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